

제22장 최종규정

제22.1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22.2조 개정

1. 양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관련 장과 그에 상응하는 부속서를 부속서 22-가에 구체화된 일반 원칙 및 협상 지침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개시되는 후속 협상(이하 “후속 협상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개정한다.
2. 후속 협상의 결과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, 이 협정의 해당 장을 대체한다. 새로 개정된 장의 발효는 제22.4조에 포함된 절차에 따른다.
3. 앞서 언급한 개정에 더하여,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. 그러한 합의되어 제22.4조에 따라 발효된 때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22.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을 그에 따라 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한다.

제22.4조 발효 및 종료

1.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.
2.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서면통보로 확정하는 그 밖의 기간 후에 발효한다.
3.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.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.

제22.5조 가입

어떠한 국가 또는 관세영역도, 그 국가나 관세영역과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, 그리고 각 당사국과 가입국 또는 관세영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승인 후에,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22.6조 정본

이 협정은 한국어,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작성된다. 그 세 가지 협정문은 동등하게 유효하며 정본이다.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부속서 22-가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

가. 일반 원칙

1.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2. 후속 협상은 각각의 부속서와 다른 장의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여, 특히 제8장(서비스 무역), 제9장(금융서비스) 및 제12장(투자)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이다.
3. 후속 협상은 투자의 설립 전 단계 및 공급형태 3의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.
4. 양 당사국은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제8장(국경 간 서비스 무역), 제9장(금융서비스) 및 제12장(투자)과 연관된 통합 유보 목록을 만드는 것에 합의하였다. 부속서 I(기존의 비합치 조치 목록), 부속서 II(당사국이 관련 장에 의한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,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, 하위 분야 또는 행위 목록), 그리고 부속서 III(금융서비스)과 같은 새로 만드는 통합 유보 목록은 이 협정에 첨부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5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성된 특정 분야의 자유화 약속의 수준을 후속 협상에서 낮추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.
6. 후속 협상에서 양 당사국은 관련 장의 어떠한 조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.¹
7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후속 협상에서 새로운 문안 제안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나. 기간

8.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, 이 협정이 발효된 날 후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,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.
9.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이 개시된 날부터 2년 내에 그 협상을 마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다.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을 위한 지침

10. 후속 협상을 통하여 구성될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은 공급형태 1과 2에 해당하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된다.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후속 협상은 이 협정의 조가 아닌, 양 당사국의 각각의 문안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.

11.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 대한 후속 협상의 결과에 특히 미래 최혜국 대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.
12.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대한 후속 협상의 결과에 특히 미래 최혜국 대우, 정보 이전 및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.
13. 기존의 비합치 조치 목록과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의한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,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, 하위 분야 또는 행위 목록은 이 협정의 부속서 III으로 첨부된다.

라. 투자 협상을 위한 지침

14. 양 당사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포괄하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를 포함할 목적으로 제12장(투자)의 모든 조를 다시 논의한다.
15. 후속 협상은 정의, 적용범위, 내국민 대우, 최혜국 대우, 대우의 최소기준, 수용, 송금, 이행요건,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, 비합치 조치,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그리고 그 밖의 규정을 다루는 조를 포함한다.
16. 양 당사국은 설립 전 및 설립 후 단계의 투자 모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약속을 통합할 목적으로 후속 협상의 결과에 이행요건에 관한 조를 포함한다.
17.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에서 간접 수용에 대한 관련된 고려 및 그에 대한 예외와 같은 쟁점들에 관하여 협상한다.

마.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한 협상 지침

18.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에서 다른 장의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에 관하여 협상한다.

바. 부속서와 관련 조의 종료 및 변경

19. 이 부속서와 제22.2조(개정)의 제1항 및 제2항은 후속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는 때에 종료된다.
20. 제22.2조(개정)의 제3항은 후속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는 때에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.

“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. 그러하게 합의되어 제22.4조(발효 및 종료)에 따라 발효된 때,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”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5년 6월 1일 서울에서 한국어,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, 각 당사국은 1부를 보관한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